

서울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20나20271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20나202711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8가합58095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김용호

피고, 항소인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이성호, 이희용

변론종결 2021. 5. 13.

판결선고 2021. 7. 22.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8가합580950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8417.4분의 54.446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5. 접수 제732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2019. 10. 8.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8쪽 4행의 “제10항”을 “제6항”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15행의 “정산”의 다음에 “(즉, 특약사항 제3항에 따른 이자 정산뿐만 아니라, 특약사항 제10항에 따라 잔금일 이후 등기이전일인 2017. 10. 20.까지 분할 상환하는 대출원금을 정산하여 지급)”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17행의 끝에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법원 소송

계속 중인 2020. 11. 20.에 이르러 원고가 잔금일 이후 2020. 7.경까지 D은행에 매월 분할하여 상환한 대출원금 216,000,000원에 대해 변제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9. 10. 8. 이미 적법하게 해제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9쪽 12행의 아래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⑥ 쌍방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이른바 ‘적금식 대출’로서 원고가 매월 원금도 분할하여 상환하고 있음을 전제로, 등기이전시 매수인인 피고들이 매도인인 원고에게 그 분할상환 대출원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예정된 등기예정일보다 약 6개월 먼저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피고들은 약정된 기한이 훨씬 경과하도록 위 정산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반면 원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H은행 대출금도 제1심 소송 진행 중이던 2019. 9.경 모두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이러한 매매계약의 내용과 이행 경과, 분할상환 대출원금의 액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단지 금융기관에 대해 인수채무를 불이행한 것을 넘어 원고에 대해 약정된 정산금, 즉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13쪽 15행의 “332,002,000원”을 “332,002,000원을”로 고치고 그 뒤부터 16행의 “종합부동산세”까지를 삭제하며, 제14쪽 7행의 “한편”부터 10행의 끝까지를 삭제한다(피고들은 이 법원에서 동시이행항변 중 이 부분에 해당하는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회근, 판사 박성윤, 판사 이의영

별지